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판 결

사 건 2018가단127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중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재원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상협

변 론 종 결 2020. 10. 21.

판 결 선 고 2021. 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계쟁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14. 체결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17. 2. 16. 접수 제4839호로 마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계  
2017. 2. 16. 접수 제484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4억 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가 2017. 2. 14. 이 사건 계쟁빌라에 관하여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신탁법상의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 2. 피보전채권 및 C의 무자력에 관한 판단

갑 1, 2, 4호증 및 을 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2016. 12. 30.자 공사비정산계약에 따른 4억 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C가 이 사건 계쟁빌라 외에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3.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

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등 참조).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계쟁빌라와 같은 빌라의 다른 호실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날짜의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같은 날짜의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선행 민사소송 확정판결(창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8나 59981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5056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일련의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과 이를 통하여 융통한 자금으로 진행된 이 사건 계쟁빌라의 신축사업에 있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업의 진행에 따라 대지 및 빌라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실질적인 동의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대출금 대부분이 기존 대출금의 변제 및 공사 대금으로 집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시행사가 스스로의 자력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아니라 일련의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과 이를 통하여 융통한 자금을 통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신탁계약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전체적인 취득과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22348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내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는 법리(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성훈

[별지1]

## 부동산의 표시

###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밀양시 D, E에 있는 F건물 G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H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I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63.78㎡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밀양시 D대 586㎡

2. 경상남도 밀양시 E대 147㎡

####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733분의 78.66

### 2.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밀양시 D, E에 있는 F건물 G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H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J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63.78㎡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밀양시 D대 586㎡

2. 경상남도 밀양시 E대 147㎡

## 대지권의 표시

## 1, 2 소유권대지권

733분의 78.66

### 3.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밀양시 D, E에 있는 F건물 K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H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I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53.86m<sup>2</sup>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밀양시 D대 586m<sup>2</sup>

2. 경상남도 밀양시 E대 147m<sup>2</sup>

## 대지권의 표시

## 1, 2 소유권대지권

733분의 66.43

[별지2]

## 부동산의 표시

###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밀양시 D, E에 있는 F건물 G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H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L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62.51㎡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밀양시 D대 586㎡

2. 경상남도 밀양시 E대 147㎡

####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733분의 77.10

### 2.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밀양시 D, E에 있는 F건물 G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H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M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62.51㎡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밀양시 D대 586㎡

2. 경상남도 밀양시 E대 147㎡

##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733분의 77.10

### 3.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밀양시 D, E에 있는 F건물 K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H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L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53.86㎡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밀양시 D대 586㎡

2. 경상남도 밀양시 E대 147㎡

##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733분의 66.43

### 4.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밀양시 D, E에 있는 F건물 G동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H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N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63.78㎡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밀양시 D대 586㎡

2. 경상남도 밀양시 E대 147㎡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733분의 78.66